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2
----------	-----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반영하고,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운영을 통한 신속한 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자격사항 반영(안 제3조)

-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 외 시설물 직무 분야(토목 등) 기술사
-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건축,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6급 이상의 공무원

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평가단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그밖에 사항 정비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추가(안 제4조)
-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 등급이고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평가단 상해보험료 480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0.9.1.~2020.9.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건축 관련 분야 6급 이상의 공무원

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6급 이상의 공무원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하는 사람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할구역 내의 전문가로 구성  
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  
가단원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  
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  
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  
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주의(별지 제4호서식)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등급이고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강원도 및 다른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소속		직위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우리 군은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평가단 등록 및 운영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을 할 수 없어 평가단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보험 가입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상해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보험사	보험 가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상해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앞 >

<b>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b>	
성명 :	
소속 :	
주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b>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b>	

85mm×55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 부(Tel : 033-330-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b>	

85mm×55mm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평 가 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 가 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붙임]

# 관계법령 발취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3.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보험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 추계서 작성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연락처	(033) 330 - 2019